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 삭제(안 제31조 삭제)
- 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로 정한 사항 삭제(안 제32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 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 서에 따라 2 이상의 도로에 접 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 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 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 다. 2.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 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 라 대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	<삭 제>

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있거나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 등 공원의 양호한 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유원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양쪽대지를 포함하고,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
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